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배포일시	2018. 8. 2.(목) / 총2매(본문2)	
담 당 자		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규철 • ☎ (044)201-3870	
보도일시		2018년 8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...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 행정예고... '20년부터 적용기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,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(금)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.

□ 이번에 행정예고한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(고시)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

○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(대형)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- 참고로,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, 「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'17~'21)」에 따라 농어촌·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'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*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(R&D) : '13. 12.~'17. 12.

②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

○ 중형 저상버스(전체길이 9,000mm 미만)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(10,500mm이상)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(대형)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,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.

③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

-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(휠체어 고정장치·휠체어 탑승공간 등)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였다.

* (주요 안전기준)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,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,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,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또한, “저상버스 제작업체, R&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

-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(20일간)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

- 전화번호: 044-201-3870, 팩스 : 044-201-5586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(☎ 044-201-38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